안전계약특수조건

전부개정 2026.03.30.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 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③ 당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산업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⑥ '안전지적서'란 당사의 직원이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불안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서식 1]를 말한다.

⑦ '감독부서'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역무가 수행되는 현장에서의 작업을 직접 감독하는 담당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⑧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 및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대상 계약 또는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허가대상 작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서식7]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제2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는 당사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감독부서로부터 인지 후, 자율안전서약서[서식 2]에 서명, 원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의 작업을 거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1. 적용 상황 : 안전시설물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상·하 동시작업,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장비의 제원을 초과하는 작업요구, 신호수 또는 유도원 미배치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황
2. 요청 방법 : 당사 출입통제어플>작업중지요청(Safety Call) 활용하여 유선통화를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 '참여마당>안전신고>작업중지요청'에 접속하여 신청
3. 조치 방법 :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은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4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등

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공사 감독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⑤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에 의거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계약 시 예정공정(원전건설공사는 원전건설 표준사업관리절차서, 일반건설공사는 건축업무편람의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①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 질식과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요청하며, 당사는 필요한 정보를 문서(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지원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사항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알리고, 관련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당사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행 후 그 결과를 감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당사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작업중 사고발생, 작업방법 변경 등 위험성이 추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작업의 중지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위험성평가를 개정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적인 교육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TBM 또는 PJB 등)을 시행하여 산업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소 작업, 고온·고압 기기 및 증기근접 작업, 분진·비산 작업, 수상·잠수 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밀폐공간 및 기기내부 작업, 화재·폭발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및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작업 등 10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수료 서류와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을 포함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단, 당사에서 지정한 감독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혼재로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시기 및 내용 조정이 가능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인 1조 근무 편성,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작업 금지 등 계약으로 정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9조(작업환경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안전사고, 환경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개인시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도급사업시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해야 하며,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필수 안전수칙 [서식 3]에 따라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담당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 시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점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① 당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 후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안내 후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 계획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연 2회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항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받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따른다.

1. 최초평가

착공 후 30일 이내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감독부서는 증빙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한다.

2. 재평가

감독부서는 아래 기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즉시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재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가. 3개월 이내 휴업 3일 이상 산업안전사고 3건 이상 발생

나. 6개월 이내 휴업 3일을 포함한 요양일수 90일 이상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다. 최초 평가 및 재평가 후 6개월 초과 시

3. 환류

감독부서는 위 1호, 2호 평가 후 개선 필요사항 등 평가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계획 및 이행결과를 평가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감독부서는 개선 내용을 확인한다.

제12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구분	비목	사용 가능한 항목	기준근거
공사	경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본사 사용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경비>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 ○ 안전점검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기준
시설관리/ 청소용역	경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규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운영지침
경비용역	경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규 경비용역 운용지침
그 외의 용역	경비	○ 설계서에 반영된 안전관련비용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 계약 설계서 (요율은 미적용, 실적급만 지급)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인증 관련 비용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단, 일부 업종(조리, 청소, 시설영선, 조경, 경비)에 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사고대비 훈련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에서 시행하는 가상 시나리오 및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안전사고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 인지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3시간(화학물질 관련 산업안전사고는 15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사고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휴업일 수가 3일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감독부서 및 산업안전담당부서에 3시간 이내 보고하고, 산업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 감독부서 및 산업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 발생, 준공 또는 당사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매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사고 발생, 준공 또는 당사 필요시에도 동 문서를 당사에 제출한다.

※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기간은 공사일(계약일)로부터 누적 적용

예시) 공사(계약) 기간이 '21.9.1. ~ '22.12.31. 일 경우, '22년 10월 말일 제출 시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기간을 '21.9.1. ~ '22.10.1.으로 적용

⑤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보고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www.csi.go.kr)에 사고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산업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산업안전담당부서가 인정할 때까지 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서식 4]를 발행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라 당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 ① 당사는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이행중인(작업중지 포함)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2. 항목별 제재기준

가. 벌점 부과기준

구 분	위반유형	벌점	비고
안전지적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제외)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15조 위반 (단, 제4조의 ③, 제10조의 ④ 제외)	5점/건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③ [서식 2] 자율안전서약서 미보관	1점/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 ①.3.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10점/월	
안전보건 평가보고	○ [서식 6] 안전관리수준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거부	50점/건	* 관련근거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1조 ③
	○ [서식 6] 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		

나. 제재기준

누계벌점	제재기준
30점	해당 사업소(또는 발전소) 정문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체 안전점검의 날 운영(1일)
50점부터 매 50점씩 증가시 (50점, 100점, 150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관리감독자가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이수 후 작업재개

3. 벌점 적용방법

가. 누계벌점은 최초 벌점부과일부터 1년 동안의 벌점을 합산하며, 1년 초과 시 전년도 누계벌점의 0.3배를 적용하여 당해연도 벌점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나. 벌점은 발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 처리한다.

다. 벌점 부과 및 관리기간은 공사계약 단위가 아니고 공사업체별로 적용 및 관리한다.

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을 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적서를 발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마. 안전담당부서는 누계벌점 30점 도달 시 1일 동안 안전캠페인,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누계벌점 50점 도달 및 도달 이후 매 50점 누계 시 작업중지 후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현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관리감독자가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캠페인, 안전점검, 교육 등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조치방법

'2'항 사항 발생 시 당사의 감독부서는 15일 이내에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담당부서는 관

리대장[서식 5]에 기록·관리하고, 상보 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본사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② [서식 3]의 필수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서식 1]의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제16조 제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 ① 당사는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상

공사·용역 이행 중(작업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계약금액(VAT 불포함)	위약금(만원/명)	비고
사망	5억원 이하	1,00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000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4,000	
	5,000억원 초과	8,000	
부상	5억원 이하	25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00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00	
	5,000억원 초과	2,000	

※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본 계약에 따른 안전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위약금 적용방법

가.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해당 공사·용역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역무범위의 대상 사업소(또는 발전소)가 2개 이상이고, 사업소(또는 발전소) 계약금액 구분이 가능할 경우는 해당 사업소(또는 발전소)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나. 산업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금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위약금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위약금 부과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90일 이상) 1명 → 1,625만원 [1,000만원 + 500만원 + 125만원]

다. 부상은 초기 진단서 기준 휴업 3일을 포함한 요양일수 90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휴업 3일 이상이면서 요양 90일 미만 요양건은 위약금의 20%를 부과한다. 단, 보호구 미착용* 사고, 감전/아크화상 사고, 질식(밀폐공간, 잠수 등) 사고, 2m 이상 추락 사고, 끼임 사고의 경우 위약금의 100%를 부과한다.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연삭 및 절단작업, 용접작업, 화공약품 취급), 안전대(대상 : 고소작업, 고리 미체결도 미착용에 해당), 방염보호구 등

라.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은 산업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

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마. 가중적용: 은폐, 보고지연, 지시사항 미이행 관련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제3호 다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요양일수와 무관하게 제2호에 규정된 위약금 부과기준 전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에 따른 가중을 한다.

1) 은폐: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2배액을 적용한다.

2) 보고지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14조의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한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1. 5배액을 적용한다.

3) 지시사항 미이행: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사의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여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2배액을 적용한다.

바. 설비피해, 발전정지·출력감발 및 공기연장 등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한다.

4. 조치 방법

위약금 부과사항 발생 시 업무주관부서장(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해당 위약금을 당사에 별도 납부하도록 입금청구서 발행 및 공문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위약금 처리 후 가중적용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위약금을 당사에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 산업안전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소 산업안전관리담당부서는 [서식 5] 안전보건경영체계이행관리시스템(KOSMOS) 내 협력회사 벌점/위약금 관리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9조(계약 해제·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산업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자 건강 및 보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한수원 사업장 등에서 역무를 수행하는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역무를 수행하기 전, 소속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건강검진 결과 등 건강상태 확인 자료*를 확보하고, 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혈압측정 등)하여 건강 상태가 양호한 근로자가 현장 출입 및 역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진, 치료, 역무 조정, 대체 근로자 투입 등)

> * 건강상태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최근 1년 이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결과
> [의사 소견 및 건강상태 판정결과(A,B,C,D) 포함]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건강 위험군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소속 근로자(도급, 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한 건강 위험군을 관리하고, '건강 고위험군 근로자 현황' 및 '건강 고위험군 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당사의 감독자를 통해 사업장 보건관리자(또는 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보건관리 이행여부 확인감독 용도의 증빙자료

※ 근로자 검진결과 등의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은 제외, 고위험군 근로자 인원수, 건강상담 등 보건관리 실적 포함

*** '최초 역무착수 전' 및 '분기 1회 이상'

부칙 <2026. 3.30.>

이 조건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안전지적서

안 전 지 적 서

No　　안전담당부서장　　㊞

귀하	안 전 지 적 서	통보 : 20 . . .	
		지적자 : ㊞	
지적일시 및 날씨 . . . 시경	장 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위반자			
한수원 감독부서 담당자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_____),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_____),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____),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____),
□ 중대재해처벌법(_____),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_____),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_____), □ 안전계약특수조건 (_____)

지적 내용 :

지적사진		
처리	20 . . .	결과 :
	한수원 감독부서 담당자 : ㊞	
확인	통계기록자(안전담당자) ㊞	안전담당파트장 ㊞

[서식 2] 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 사다리 사용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

구 분	위반유형	벌점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안전지적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제외)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15조 위반 (단, 제4조의 ③, 제10조의 ④ 제외)	5점/건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③ [서식 2] 자율안전서약서 미보관	1점/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 ①.3.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10점/월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귀중

[서식 3]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사항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사항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 사다리 사용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

구 분	위반유형	벌점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안전지적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제외)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15조 위반 (단, 제4조의 ③, 제10조의 ④ 제외)	5점/건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③ [서식 2] 자율안전서약서 미보관	1점/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 ①.3.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10점/월	

□ 위반횟수 누적기간

○ 해당 공사·용역의 계약기간 중 해당 사업소에만 적용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 재	한수원 감독부서	
	차 장	부 장

○ 계약번호 :
○ 공사·용역명 :
○ 공사·용역기간 : 20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_____조
4. 제재내용
 ○ 안 전 사 고 : 벌점 부과_____점
 ○ 산업재해 보고 : 벌점 부과_____점
 ○ 안 전 지 적 서 : 벌점 부과_____점
 ○ 벌 점 누 계 : _____점
 ○ 위약금 부과 : _____원
 ○ 작업중지(중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한수원 감독부서) : 소 속 성 명 (인)

※ 안전담당부서 담당자 : (인)

[서식 5] 수급인 벌점/위약금 부과 현황 관리대장

수급인 벌점/위약금 부과 현황 관리대장

① 업 체 명 (대표자 등)	② 계약번호	③ 공사/용역명	④ 총공사비 (백만원)	⑤ 공사/용역 기간	⑥ 벌점 또는 위약금/내용	⑦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	⑧ 부과일자	산업안전사고(또는 벌점부과) 관련					
								⑨ 발생일	⑩ 장소	⑪ 업체(구분)	⑫ 공사/용역(작업) 내용	⑬ 사망자	⑭ 부상자(입원일수)
										□ 수급인 □ 하수급인() □ 재하수급인()			

[작성요령]

① “업체명”은 계약상대자(수급인) 업체명과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

② “계약번호”는 한수원 ERP에서 부여된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계약번호

③ “공사명”은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공사 또는 용역명 기재

④ “총공사비(백만원)” 는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총 공사/용역비 기재

⑤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상 공사/용역기간 기재

⑥ “벌점 또는 위약금/내용”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또는 위약금 및 내용 기재

⑦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업체에 부여된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 기재

⑧ “부과일자”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일자 기재

⑨⑩⑪⑫⑬⑭ “산업안전사고,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⑪ “업체(구분)”은 산업안전사고 발생,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 대상 업체 기재

⑭ “입원일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상의 입원일수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안전보건－1044 개정, 2025.2.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일반협력회사 用)

평가일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20점)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및 이행상태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수준	5		
B. 실행수준 (40점)	4. 위험성평가 ・작업 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기준 수립 및 준수(보호구 착용 등)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수준(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의 계획 및 실시, 기록관리(성과분석)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준수 수준	5		
	9.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준수 여부	5		
C. 운영관리 수준 (20점)	10.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 및 연락체계 관리 수준	5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2. 비상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20점)	13. 산업재해 현황 ・재해율, 산업재해 실적	20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감점부여
	평가 점수(100점 만점) 계	100		

개선 필요사항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	(서명 또는 인)

※ 평가자는 협력업체를 감독하는 한수원 감독자이며, 관리감독자는 한수원 해당 부서장임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일반협력회사 用)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일반원칙	우수(5점)	-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고 있음.
	보통(3점)	-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으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흡(0점)	-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음
2. 계획수립	우수(10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보통(5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임.
	미흡(0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없음
3. 역할 및 책임	우수(5점)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회사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교육이력) 등**을 가지고 있음
	보통(3점)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회사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는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교육이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성원이 존재함.
	미흡(0점)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회사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B. 실행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위험성평가	우수(5점)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전파교육, 서류 서명 등**의 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음
	보통(3점)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전파교육, 서류 서명 등의 관리가 일부 이행되지 않음
	미흡(1점)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전파교육, 서류 서명 등의 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5. 안전점검	우수(10점)	- 도급작업의 **작업관련 점검표를 절차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으며,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5점)	- 도급작업의 작업관련 점검표 작성이 미흡하거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상태가 미흡함 - 또는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잘 운영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 발생
	미흡(0점)	- 도급작업의 작업관련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음 - 또는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6. 이행확인	우수(10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한수원 지적사항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보통(5점)	- 안전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이행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미흡(0점)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할수 없음
7. 교육 및 기록	우수(5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록 관리상태 양호 -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 교육 양호
	보통(3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등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록 관리상태 일부 미흡함 - 또는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 교육이 일부 미흡함
	미흡(0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등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록 관리상태 확인이 불가함 - 또는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 교육 실적이 없음
8. 안전작업허가	우수(5점)	- 한수원의 **안전작업허가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가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음**
	보통(3점)	- 한수원의 안전작업허가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의 이해도가 낮고 허가외 작업 일부(1건이하) 발생
	미흡(0점)	- 한수원의 안전작업허가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가 알고 있지 않으며 허가외 작업 다수(2건이상) 발생
9. 안전보건 관리비용	우수(5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항목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집행**중임 * 적절한 집행: 공정률 -30%이상 집행 (ex. 공정율 50%이상이면 집행율 20%이상)
	보통(3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형식적이거나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음
	미흡(0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고 집행실적 확인 불가

C. 운영관리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0.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5점)	- 크레인, 지게차 등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3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임
	미흡(0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고 작동하기 힘듦
11. 위험물질 및 설비	우수(10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과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5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일부 누락되거나 점검,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형식적임
	미흡(0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없거나 점검,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12. 비상대응훈련	우수(5점)	- 작업 관련 산업안전사고 **비상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시나리오,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보통(3점)	- 비상대응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함
	미흡(0점)	- 비상대응 훈련계획이 없고, 훈련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3. 산업재해 현황	우수 (2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함
	보통 (1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0점)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감점: 최근 2년 동안 한수원 관련 작업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벌점 기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2점/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시 -4점으로 함)
 - 기타 산업재해 발생: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0.5점/건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함)

□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일반협력회사 用)” 평가항목별 증빙서류(예시)

항목	증빙 서류
1. 일반원칙	-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3. 역할 및 책임	- 안전관리부서 등의 조직도, 업무분장표(역할,책임,권한 포함) - 자격이 필요 한 작업에 대한 자격증빙(교육이력 등)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 전파 교육 결과(서명포함)
5. 안전점검	- 작업관련 점검표 작성 실적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관련 절차
6. 이행확인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실적(한수원 지적사항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관련 절차
7. 교육 및 기록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및 실적 -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교육 실적
8. 안전작업허가	- 작업허가서 등 작업시 필요서류
9. 안전보건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실적
10. 신호 및 연락체계	- 크레인, 지게차 등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 간의 연락체계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목록 -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
12. 비상대응훈련	- 비상대응훈련 계획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시나리오,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대응훈련 실적
13. 산업재해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안전보건공단 발행) - 산업재해 보고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소규모 협력회사 用)

평가일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20점)	1. 작업관리자 ・현장소장(작업책임자) 별도 지정 및 전담 업무 수행	10		
	2. 안전담당자 ・안전담당 별도 지정 및 전담 업무 수행	10		
B. 실행수준 (50점)	3. 위험성평가 ・작업 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수준(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5. 교육 및 훈련 ・교육 참여도 및 TBM 실시, 작업자 위험 숙지 수준	10		
	6. 보호구 지급상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수준	10		
	7. 사업장 관리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수준	10		
C. 운영관리 수준 (10점)	8. 신호 및 연락 체계 ・신호 및 연락 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D. 재해발생 수준 (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재해율, 산업재해 실적	20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감점부여
	평가 점수(100점 만점) 계			

개선 필요사항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	(서명 또는 인)

※ 평가자는 협력업체를 감독하는 한수원 감독자이며, 관리감독자는 한수원 해당 부서장임

※ 소규모 협력회사 : 공사 기간 3개월 미만 공사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로 한정함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소규모 협력회사 用)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작업관리자	우수(10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지정 및 업무가 명문화**되었으며, 업무수행 실적이 존재함
	보통(5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지정 되었으나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업무수행 실적 등 미흡
	미흡(0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지정 사실이 없거나 및 업무R&R 규정이 없음
2. 안전담당자	우수(10점)	- **안전보건관련조직이 구성**되고, **안전담당자 지정 및 업무가 명문화**되었으며, 업무수행 실적이 존재함
	보통(5점)	- 안전보건관련조직이 구성되고, 안전담당자 지정 되었으나 업무 R&R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업무수행 실적 등 미흡
	미흡(0점)	- 안전보건관련 조직구성이 없고 안전담당자 지정 사실이 없거나 및 안전보건 R&R이 없음

B. 실행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3. 위험성평가	우수(10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고,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을 실시(서명포함) 하였음
	보통(5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실적이 없음(서명누락포함)
	미흡(0점)	- 위험성평가 수행실적 및 교육실적이 없음
4. 이행확인	우수(10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한수원 지적사항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보통(5점)	- 안전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이행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미흡(0점)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가함
5. 교육 및 훈련	우수(10점)	- **법정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사고사례/아차사례 등의 전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작업전 TBM**을 잘 이행하고 있음
	보통(5점)	- 법정안전보건 교육은 이수하고 있으나 사고사례/아차사례 전파, TBM 활동이 잘 이행되지 않음
	미흡(0점)	- 법정안전보건 교육, 사고사례/아차사례전파, TBM 활동 실적이 없음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6. 보호구 지급상태	우수(10점)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을 구입**하고 소속근로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착용교육내역 및 지적사항 등 관리대장**이 존재함
	보통(5점)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을 구입하고 소속근로자에게 배부하였으나, 착용교육내역 및 지적사항 등의 실적 및 관리대장이 없음
	미흡(0점)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을 구입하지 않음
7. 사업장 관리상태	우수(10점)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 사업장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보통(5점)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 사업장 시설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거나, 관련 활동 자료가 미흡함
	미흡(0점)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C. 운영관리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8. 신호 및 연락 체계	우수(5점)	-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3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임
	미흡(0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고 작동하기 힘듦
9. 위험물질 및 설비	우수(5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과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3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일부 누락되거나 점검,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형식적임
	미흡(0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없거나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0. 산업재해 현황	우수 (2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함
	보통 (1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0점)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감점: 최근 2년 동안 한수원 관련 작업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벌점 기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2점/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시 -4점으로 함)
- 기타 산업재해 발생: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0.5점/건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함)

□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소규모 협력회사 用)” 평가항목별 증빙서류(예시)

항목	증빙 서류
1. 작업관리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선임 내역 - 안전관리 관련 조직도, 업무분장 내역
2.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 선임 내역 - 안전보건관련 구성원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 안전담당자 등의 업무수행 실적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내역 - 위험성평가 교육내역(서명포함)
4. 이행확인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실적(한수원 지적사항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관련 절차
5. 교육 및 훈련	- 법정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 사고사례/아차사례 등 전파교육 실적 - 작업전 TBM 실적
6. 보호구 지급상태	- 안전관련물품 및 보호구 지급대장 - 보호구 착용, 지적 등 내역
7. 사업장 관리상태	- 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 설비 및 시설물 위험요소 개선 실적
8.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 간의 연락체계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목록 -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
10. 산업재해 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안전보건공단 발행) - 산업재해 보고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用)

평가일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30점)	1. 인력확보 · 안전전문인력 보유(자격보유자 등) 및 안전업무 전담 수행	10		
	2.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수준	10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등 체계 구축 및 이행	10		
B. 실행 수준 (30점)	4. 위험성평가 · 작업 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재해대응체계 · 재해 신고·보고 절차, 유관기관 및 비상연락망 구축	10		
	6.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 분장 · 재해 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 분장	10		
C. 운영관리 수준 (10점)	7. 교육 훈련 ·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10		
D. 재해발생 수준 (30점)	8. 산업재해 현황 · 재해율, 산업재해 실적	20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감점부여
	9. 중대재해 후속 조치 · 중대재해로 인한 대책수립 및 이행	10		
	평가 점수(100점 만점) 계			

개선 필요사항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	(서명 또는 인)

※ 평가자는 협력업체를 감독하는 한수원 감독자이며, 관리감독자는 한수원 해당 부서장임

※ 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협력회사로 한정함(청소, 경비,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用)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인력확보	우수(10점)	- **안전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자격보유자 등) 관련 자격증이 구비되어 있으며, 안전보건 업무분장이 명확하며, 업무수행 실적이 존재함
	보통(5점)	- 안전전문인력(자격보유자 등)이 있으나 관련 자격증이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업무분장, 업무수행 실적 등 미흡
	미흡(0점)	- 안전전문인력 미보유, 안전보건 업무분장, 실적 등이 없음
2. 예산편성 및 집행	우수(10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항목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집행**중임 * 적절한 집행: 공정률 -30%이상 집행 (ex. 공정율 50%이상이면 집행율 20%이상)
	보통(5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형식적이거나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음
	미흡(0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고 집행실적 확인불가
3.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우수(10점)	- **안전보건목표 및 실행계획**(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이 문서화 되어 있음
	보통(5점)	- 안전보건목표 및 실행계획(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이 형식적이거나 일부만 문서화 되어 있음
	미흡(0점)	- 안전보건목표 및 실행계획(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이 없음

B. 재해대응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위험성평가	우수(10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고,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을 실시(서명포함)하였음
	보통(5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실적이 없음(서명누락 포함)
	미흡(0점)	- 위험성평가 수행실적 및 교육실적이 없음
5. 재해대응 체계	우수(10점)	- 화재, 산업안전사고 등 사고별로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작성됨
	보통(5점)	- 비상시 연락체계가 작성되었으나 일부 누락됨
	미흡(0점)	- 비상시 연락체계가 없음
6.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우수(10점)	- **재해 대응 조직**이 구성되고, **업무분장**이 명문화되어 있음
	보통(5점)	- 재해 대응 조직이 구성되었으나 업무분장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0점)	- 재해 대응 조직 구성이 없고, 업무분장이 없음

C. 교육 훈련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7. 교육 훈련 수준	우수(10점)	-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준수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구비되어있음
	보통(5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준수함
	미흡(0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8. 산업재해 현황	우수 (2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함
	보통 (1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0점)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감점: 최근 2년 동안 한수원 관련 작업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벌점 기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2점/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시 -4점으로 함)
 - 기타 산업재해 발생: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0.5점/건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함)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9. 중대재해 후속조치	우수(20점)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등을 고려한 **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제거 조치, 피재자 구호조치 등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응 훈련**을 이행하였음
	보통(10점)	- 재해 시나리오 및 중대재해 발생시 대책을 작성하였으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거나, 중대재해 대책상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제거 조치, 피재자 구호조치 등 내용이 미흡하거나, 대책 이행 실적이 부족함
	미흡(0점)	- 재해 시나리오 및 중대재해 발생시 대책을 작성하거나 이행하지 않음

□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用)” 평가항목별 증빙서류(예시)

항목	증빙 서류
1. 인력확보	- 안전관리 관련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 전문자격증 현황
2. 예산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실적
3.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 포함)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내역 - 위험성평가 교육내역(서명포함)
5. 재해대응체계	- 비상연락체계
6. 재해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 재해 대응 조직 - 업무분장 내역
7. 교육 훈련 수준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적
8. 산업재해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안전보건공단 발행) - 산업재해 보고서
9. 중대재해 후속조치	- 중대재해 대비 비상훈련 시나리오 등 비상훈련 계획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제거 조치, 피재자 구호조치 등 내용을 포함) - 비상대응 훈련 실적

[서식 7]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사/용역명		
공사/용역기간		
도급금액		
계 상 된 안전관리비		

2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 ○ 본부장 귀 하

결 재	공사/용역감독부서 검토			산업안전관리(담당)부서확인		
	담당	차장	부장	담당	차장	부장
	전자/수기결재 가능					

협 력 회 사 명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책				
성 명				
서 명				

1. 공사/용역개요
2. 안전관리 조직
3. 안전교육실시 계획

구 분	교육내용	주 관	대상자	실시주기	비고

4.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대책

번 호	작 업 공 정	예 상 위 험	주요안전대책

5.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번호	안전순시자	점검주기	순시 및 점검지역(장소)	비 고

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직 종	보 호 구 명	지급수량	지급시기

7.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직종 또는 중기명	투입일정	비 고

8.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명	주요 방호조치내용	관련법령

9.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동원인원(명)	조 치 내 용

10.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 일반사항(입찰 예정가 기준 작성)

발주자		공사금액	계	
공사/용역 종류 (해당란에 ○표)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중건설공사 4. 특수건설공사		(1)재료비(관급 별도)	
			(2)재료비(관급)	
			(3)직접노무비	
			(4)기 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용역금액중(1)+(2)+(3)]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비율(%)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2. 안전시설비 등		%
3. 보호구 등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총 계		100%

3. 세부 사용계획

항 목	세부사항	단위	수량	단 가	산출금액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1. 세부작업공정표